

남해 삼동 - 창선 국도건설공사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

2023. 07.



국 토 교 통 부
부 산 지 방 국 토 관 리 청

제1장 계획의 목적 및 개요

1.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 본 과업은 한려해상국립공원 등 천혜의 자연환경으로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으나, 노측 협소 및 심한 굴곡으로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높고, 성수기 교통체증이 심각한 실정임. 따라서, 기존도로 확장을 통하여 간선도로의 기능 회복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또한, 환경영향평가법에 의거하여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최적의 도로 노선선정과 선정된 노선에 대한 환경상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을 수립하기 위함에 있음.

1.2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1.2.1 전략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개발기본계획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관련 [별표2](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협의 요청시기)에 의거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임.

〈표 1-1〉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구 분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협의 요청시기
전략 환경 영향 평가	마. 도로의 건설	2) 「도로법」 제2조제1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도로(고속국도는 제외한다)의 건설공사 계획 (별표 3 제5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규모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1조 또는 제73조에 따른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의 도로노선을 선정하는 때
계획내용		연장 11.1km(확장 : 11.1km)[평가대상(10km 이상)규모에 해당]	

1.2.2 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별표3](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임.

〈표 1-2〉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구 분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협의 요청시기
환경 영향 평가	5. 도로의 건설사업	「도로법」 제2조제1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도로의 건설사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왕복 2차로 이상인 기존 도로로서 길이 10킬로미터 이상의 확장	「도로법」 제23조에 따른 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전
계 획 내 용		연장 11.1km(확장 : 11.1km)[평가대상(10km 이상)규모에 해당]	

1.3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및 제24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실시함

<표 1-3>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근거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p>제11조(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p> <p>①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이 장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이라 한다)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개발기본계획(이하 "개발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사업계획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2. 토지이용구상안 3. 대안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p>② 행정기관 외의 자가 제안하여 수립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제안하는 자가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p>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
<p>제24조(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p> <p>①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이 장에서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이라 한다)을 결정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2.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3.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p>②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p>

1.4 계획의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

1.4.1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

- 2022.07 : 남해 삼동-창선 국도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 2023.02 : 관계기관 협의
- 2023.03~04 : 주민설명회 및 간담회
- 2023.05 : 기본설계 VE
- 2023.06 :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구성 및 심의
[협의회 서면 심의기간 : 2023. 6. 12 ~ 2023. 6. 26]
- 2023.07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제출(예정)
- 2023.08 : 주민 등의 의견수렴(예정)
- 2023.09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요청(예정)

1.5 계획의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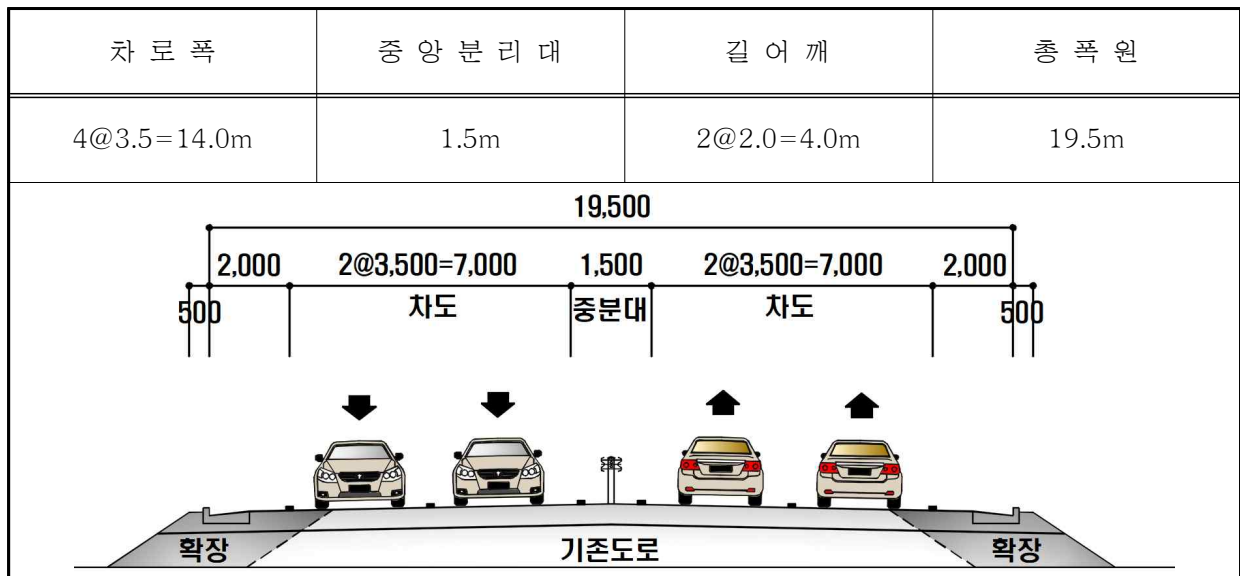
- 가. 계획명 : 남해 삼동-창선 국도건설공사
- 나. 위치 :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지족리 ~ 창선면 대벽리
- 다. 총연장 : 11.1km(확장 : 11.1km)
- 라. 총폭원 : 2→4차로 확장(19.5m)
- 마. 계획수립기관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바. 승인기관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사. 협의기관 : 영산강유역환경청
- 아. 주요 계획내용
 - 설계속도 : 70km/hr
 - 주요 시설물 : 교량(504m/4개소)

〈표 1-4〉 주요 구조물 현황

교량명	위치	교량형식	연장	폭원	통과방안
창선교	0+500	ST.BOX	438m	10.9m	지속해협 통과
당저교	3+540	RC.RAMEN	24m	20.4m	교차로상부 통과
창선천교	4+000	RC.RAMEN	30m	20.4m	하천상부 통과
상신교	4+500	RC.RAMEN	12m	20.4m	하천상부 통과

○ 표준횡단면도

- 토공부





(그림 1-1) 계획노선 위치도(대안 2안 기준)

제2장 대상지역 설정

2.1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 본 계획노선의 대상지역 설정은 노선을 계획함에 있어 계획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정량적 및 정성적으로 예측하기 위하여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영향이 예상되는 항목에 대하여 영향권을 설정하였음.
-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2-240호, 2022.12.12)”,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등에 관한 안내서(환경부, 개정 2023.1.1)” 및 유사 사례를 참고하여 본 계획노선으로 인하여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대상 지역으로 설정함.

〈표 2-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평가항목		평가대상지역 설정 사유	대상지역 범위	비고	
계획 의적 정성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검토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	
	대안설정·분석의 적정성	○ 설정된 대안을 환경적 측면에서 비교·분석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	
입지 의 타 당 성	자연 환경의 보전	생물다양성· 서식지 보전	○ 계획노선으로 인한 생태계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야생생물보호지역 등 각종 보호지역 영향여부 검토 ○ 생태자연도 1등급, 기타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 영향여부 검토	문헌조사 : 1.0km 현지조사 : 0.5km이내	공사시 운영시
		지형 및 생태축 의 보전	○ 학술적·문화적 또는 자연환경보전 가치가 있는 지역, 백두대간 및 주요 정맥 등 주요 산림축의 훼손 여부 검토 ○ 생태축·녹지축 등 생태적 연속성의 단절여부 검토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공사시
		주변 자연경관 에 미치는 영향	○ 절·성토 공사로 인한 사면발생구간 및 계획노선(교량 등)으로 인한 경관변화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근경(반경 0.5km이내) 중경(반경 1.0km이내) 원경(반경 2.0km이내)	운영시
		수환경의 보전	○ 각종 수환경 및 해양환경 관련 보호 지역 영향여부 검토 ○ 운영시 수질 영향여부 검토(비점오염원 영향 등)	계획노선 및 주변 수계	공사시 운영시

〈표 계속〉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별 평가대상지역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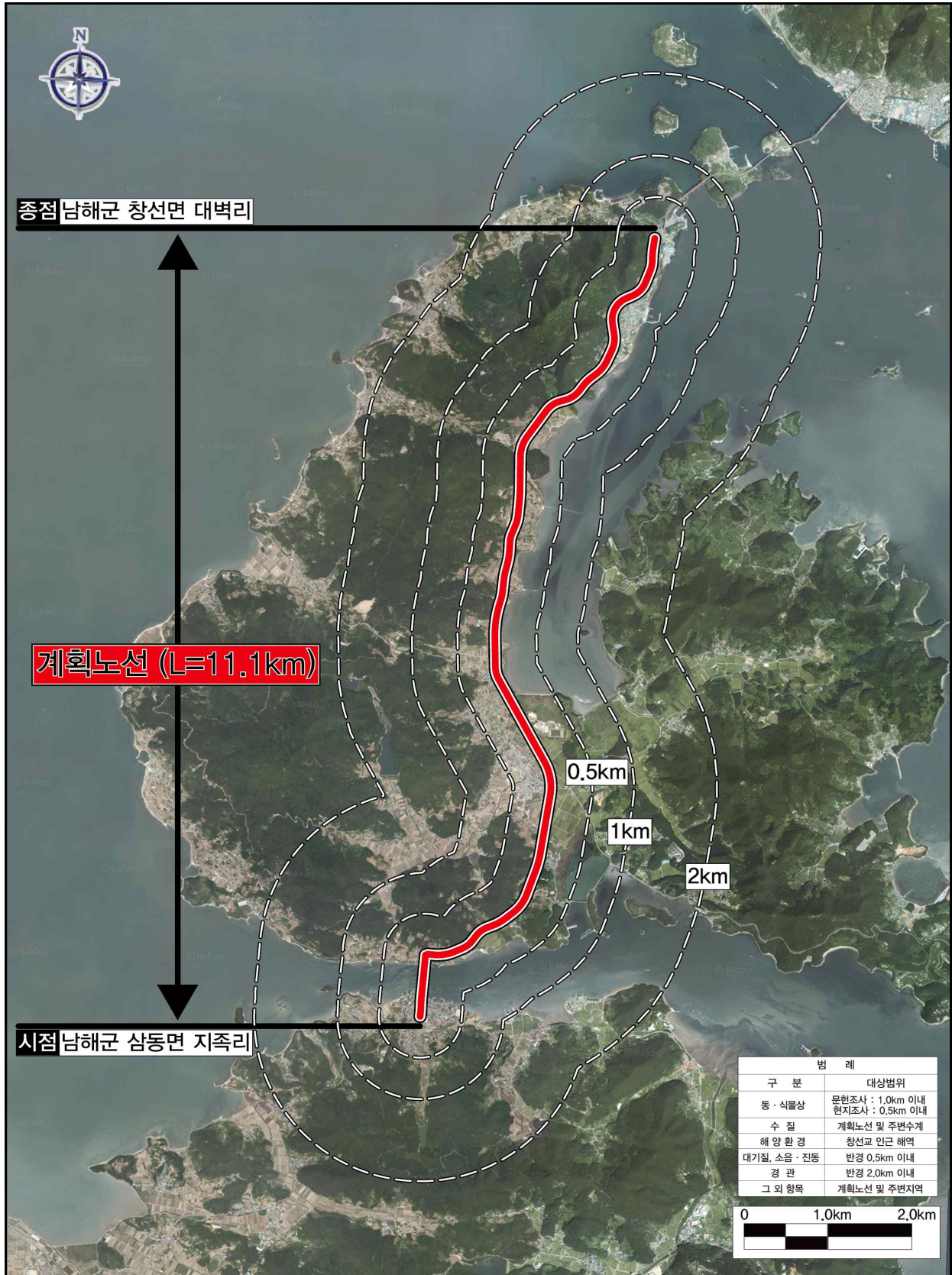
평가항목		평가대상지역 설정 사유		대상지역 범위	비고
입지의 타당성	생활환경의 안전성	대기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장비 운영에 따른 비산먼지 및 대기오염물질의 발생 ○ 운영시 차량 배기가스에 의한 대기오염물질의 발생 	계획노선 경계로부터 0.5km	공사시 운영시
		환경기준 부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장물 철거 등에 의한 토양오염 ○ 장비가동시 유류 누출 등에 의한 토양오염 	계획노선	공사시 운영시
		소음·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시 장비 가동에 의한 소음·진동 영향여부 검토 ○ 운영시 차량운행으로 도로소음영향 여부 검토 	계획노선 경계로부터 0.5km	공사시 운영시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수처리, 폐기물처리 등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분포여부 조사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시 건설장비 폐유, 건설폐기물 및 임목폐기물, 투입인부 생활폐기물 및 분뇨 발생 	계획노선	공사시 운영시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이용 변화 	계획노선	공사시

〈표 2-2〉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별 평가대상지역 설정

평가항목		평가대상지역 설정 사유		대상지역 범위	비고
자연생태환경	동·식물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노선을 포함한 조사지역의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계획시행으로 인해 동·식물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경계로부터 0.5km)	공사시 운영시	
	자연환경 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시행으로 인해 자연환경자산에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공사시 운영시	

〈표 계속〉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별 평가대상지역 설정

평가항목	평가대상지역 설정 사유	대상지역 범위	비고	
대기환경	기상	○ 계획노선의 기상자료를 분석하여 계획시행으로 인한 영향 예측 및 타 항목의 평가자료로 이용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
	대기질	○ 공사시 공사장비 가동에 따라 발생하는 비산먼지 및 장비 배기가스로 인한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 운영시 교통량으로 인해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경계로부터 0.5km)	공사시 운영시
	온실가스	○ 공사시 공사장비 가동으로 인한 온실가스 발생 지역 ○ 운영시 교통량에 따른 온실가스의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공사시 운영시
수환경	수질 (수리·수문 포함)	○ 공사시 사업부지내 초기우수 발생 및 투입인력에 의한 우수 등의 유입이 예상되는 수계 ○ 교량 공사로 인한 계획노선 인근 수계 수질 영향 ○ 운영시 점오염원 및 비점오염원에 의한 영향이 예상되는 수계	계획노선 및 주변수계	공사시 운영시
	해양환경	○ 교량(창선교) 공사로 인한 해양환경 영향 검토	창선교 인근 해역	공사시
토지환경	토지이용	○ 계획시행에 따른 토지이용상의 변화가 수반되는 지역	계획노선	공사시
	토양	○ 공사장비 발생 폐유, 지장물 철거 등에 의해 토양오염이 예상되는 지역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공사시
	지형·지질	○ 공사에 의한 절·성토 등에 따른 지형변화가 예상되는 계획노선	계획노선	공사시
생활환경	친환경적 자원순환	○ 공사시 생활폐기물, 건설폐기물 및 투입장비에 의한 폐유발생이 예상되는 지역	계획노선	공사시
	소음·진동	○ 공사시 건설장비의 소음진동 수준과 거리감쇠 영향을 고려한 계획노선 주변지역 ○ 운영시 교통량에 따른 소음·진동의 영향이 예상되는 계획노선 주변지역	계획노선 경계로부터 0.5km	공사시 운영시
	경관	○ 깎기·쌓기 및 구조물 설치로 인하여 경관 변화가 예상되는 주변지역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운영시
사회경제환경	인구 및 주거	○ 계획시행에 따른 유발인구 추정 및 인구·주거 변화 등을 파악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공사시 운영시



(그림 2-1)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평가대상지역 설정도

제3장 대안의 설정

3.1 대안의 종류 및 선정

3.1.1 관련규정 검토

- 본 계획과 관련한 대안의 종류는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 2022-240호, 2022.12.12)”에 따라 선정하여 비교·검토하였음

가. 대안의 종류 및 선정방법에 관한 사항

- 대안이라고 하면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는 대상계획의 목표와 방향, 환경적 목표와 기준, 추진 전략과 방법, 수요와 공급, 위치와 시기, 입지 등 조건이 다른 여러 가지 안을 말하며, 환경영향평가서에서는 해당계획의 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저감 또는 방지할 수 있는 모든 합리적인 방안으로서 규모, 계획지역 경계, 토지이용계획, 시기, 공법, 기타의 저감방안 등 조건이 다른 여러 가지 안을 말함

<표 3.1-1> 대안의 종류 및 선정방법

- 개발기본계획 : 개발입지 대안, 중점 평가항목별 대안과 토지이용계획(또는 노선)대안의 종류를 검토하여 제시
- 대안의 설정은 계획의 목표와 방향, 추진 전략과 방법, 수요와 공급, 위치와 시기, 토지이용 등에 대하여 설정 가능한 대안(No Action 포함)을 설정함

대안종류	선정 방법	선정(안)
계획비교	○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 가능한 상황(No Action)과 계획을 수립했을 때 발생 가능한 상황을 대안으로 선정	●
수단·방법	○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대안으로 선정	-
수요·공급	○ 개발에 관한 수요·공급을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수요·공급량(규모)에 대한 조건을 변경하여 대안으로 선정	-
입 지	○ 개발 대상 입지를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대상지역 또는 그 경계의 일부를 조정하여 대안으로 선정	●
시기·순서	○ 개발 시기 및 순서를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시행 시기 및 진행 순서(예 : 연차별 개발) 등의 조건을 변경하여 대안으로 선정	-
기 타	○ 상기 대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안 또는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계획의 성격과 내용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대안	-

3.1.2 대안의 설정

가. 대안설정의 기본방향

- 본 계획의 대안설정은 상기 관련규정을 고려하여 선정하되, 계획의 특성 및 대안의 선정방법 등을 참고하여 설정함
- 따라서 본 계획의 경우 상기 대안 선정방법중 “계획비교” 및 “입지”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 설정하였음
 - 「계획비교」 측면에서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경우(No Action : 대안 1)와 계획을 수립했을 경우(Action : 대안 2)로 구분하여 설정하였음
 - 「입지」 측면에서 2가지 대안노선을 설정하여 검토하였음

나. 대안설정

- 설정된 대안은 계획비교, 입지에 관한 사항이며, 대안별 개요는 다음과 같음

〈표 3.1-2〉 대안별 개요

구 분	선정기준	내 용	
계획비교	계획수립 여부	1안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경우 (No Action)
		2안	계획을 수립하였을 경우 (Action)
입지	대안별 노선 선정	1안	대안 노선 1안
		2안	대안 노선 2안

3.2 대안별 비교·검토

가. 계획비교에 따른 대안검토

- 행정계획 수립시(Action) 및 행정계획 미수립시(No Action)에 따른 대안별 환경적인 비교·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계획비교에 따른 대안별 비교결과는 다음과 같음

〈표 3.2-1〉 계획비교에 따른 대안별 검토결과

구 분	대안 1(No Action)	대안 2(Action)
토지이용 측면	○현상태 유지	○계획적인 개발을 통해 원활한 교통과 지역경제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주민, 관광객 등에게 질 높은 교통서비스를 제공
각종 보호지역에 미치는 영향	○현상태 유지로 보호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	○대부분은 생태·자연도 2,3등급 통과 ○수산자원보호구역을 통과하나 가물막이 공사 등으로 해양환경 영향 최소화
생태계훼손 가능성	○생태계변화 없음	○생태계 훼손이 발생하나 교량, 측구내 경사로, 유도휨스 등 저감방안을 수립하여 영향 최소화
지형의 훼손에 미치는 영향	○지형의 변화가 없으므로 지형의 훼손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	○지형훼손이 발생하나 종단 구배를 기존 자연 지형에 최대한 적합하게 조절하여 영향 최소화
쾌적한 생활환경의 유지에 미치는 영향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 없음	○공사시 일시적인 영향이 예상되나 저감대책으로 최소화 가능 ○운영시 선형 개량 및 기존 가로망과의 적정 교차 계획으로 도로 접근성 향상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없음	○주변 자연경관을 고려한 계획수립으로 경관변화 최소화 가능
환경기준의 유지 및 달성에 미치는 영향	○현재상태 유지	○공사시 일시적인 영향이 예상되나 저감대책으로 환경기준 유지 가능
검토내용	○계획시행 시 일부 환경영향이 예상되나 대상지역 여건에 맞는 적절한 저감방안을 수립, 이행토록하여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계획시행을 통해 노측 협소 및 교통사고 위험, 교통체증 등을 개선하여, 간선도로의 기능 회복 및 질 높은 교통서비스 제공	
선정안	-	◎

나. 입지 대한 검토

- 계획노선의 선형을 입지적인 측면에서의 대안으로 선정하여 비교·검토한 결과, 검토 2안을 최종안으로 선정하였음

<표 3.2-2> 입지에 따른 대안 비교 검토결과

구 분		검토1안	검토2안
노선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도로 확장노선 계획 • 창선면 소재지 우회구간 양측확장계획 • 냉천마을 중앙부 통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도로 확장노선 계획 • 창선면 소재지 우회구간 편측확장계획 • 냉천마을 후면부 우회통과
연 장		L=11.1km	L=11.1km
토 공	깎 기	40.9만 m ³	46.3만 m ³
	압버력	30.2만 m ³	18.5만 m ³
	쌓 기	9.6만 m ³	0.4만 m ³
구조물	교량	5개소 / 565m	4개소 / 504m
추 정 사업비	사업비	1,656.3억원	2,272.2억원
특 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자원보호구역 및 국가지정문화재(명승 71호) 통과로 인한 환경 영향 및 민원 예상 • 지족삼거리구간 지장물 저축 과다 및 냉천마을 통과로 인한 민원 예상 • 대부분 생태자연도 2, 3등급 통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자원보호구역 및 국가지정문화재(명승 71호) 통과로 인한 환경 영향 및 민원 예상 • 지족삼거리구간 지장물 저축 최소 및 냉천마을 우회로 인한 민원 최소화 • 대부분 생태자연도 2, 3등급 통과
검토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계획 수립으로 인하여 생활환경 및 자연환경 등 다소 영향이 있으나, 지장물 저축 최소화 및 우회노선을 통한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검토2안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선정(안)		-	◎

제4장 평가항목 및 범위 등의 설정

4.1 전략환경영향평가

4.1.1 평가항목의 설정

- 전략환경영향평가가시 환경영향 분석을 위하여 계획으로 인해 예상되는 환경영향요소를 검토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항목을 중점평가 항목으로 설정하였음

〈표 4.1-1〉 평가 항목 선정사유 및 선정결과

평가항목		선정결과	선정 사유
계획의 적정성		중점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대안 설정·분석 검토
입지의	자연환경의 보전	생물 다양성 서식지 보전	중점 ○ 계획시행시 자연환경자산 등 각종 보호지역에 영향 예상 ○ 계획시행시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의 동·식물 서식지 및 다양성의 변화 예상 ○ 각종 보호생물종의 영향검토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중점 ○ 생태·자연도 1등급 및 주요 정맥 등 지형·지질 변화 예상, 생태축 단절 검토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중점 ○ 계획시행으로 스카이라인 변화 등 경관 영향 예상
		수환경의 보전	중점 ○ 계획노선 및 주변 수계(해양환경 포함)의 현황 파악 및 계획시행으로 인해 주변 수계에 영향 예상
타당성	생활환경의 안정성	환경기준 부합성	중점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의 대기질, 토양, 소음·진동 현황 파악 ○ 계획시행시 대기질 변화 및 토양오염 유발요인 검토, 소음·진동 영향 등이 예상
		환경기초시설 적정성	일반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의 환경기초시설 현황 파악 및 처리가능 여부 검토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일반 ○ 계획시행시 폐기물 발생량 및 자원활용계획 검토 ○ 계획시행시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에너지 사용계획 검토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일반 ○ 계획시행시 토지이용 변화 예상	

4.1.2 평가범위 및 방법 설정

가. 평가 항목별 조사예측 방법

- 본 계획의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조사·예측 방법은 다음과 같음
- 조사는 기존자료를 활용하되, 현지조사 및 탐문조사를 병행하여 실시
- 예측은 보전대상 등 조사시 파악된 계획노선의 환경현황을 바탕으로 계획시행에 따른 환경영향 정도를 정량적으로 분석
- 영향예측 결과에 따라 환경보전방안을 수립

<표 4.1-2>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별 조사예측방법

구분		조사 계획	예측 및 평가방법
계획의 적정성		① 조사내용 : 상위 및 관련계획 ② 조사범위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 자료 및 현지조사 병행	○ 관련 상위계획과 연계성 및 관련계획과의 조화성 검토, 대안 계획의 적정성 검토
입지의 타당성	생물 다양성 서식지 보전	① 조사내용 : 자연(식생현황 및 동·식물서식 환경 등) 및 자연환경자산 현황 ② 조사범위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 자료(광역) 및 현지조사 병행 ④ 조사지점 - 포유류, 조류, 식물상, 양서·파충류, 육상 곤충류 : 계획노선(좌·우) - 육수동물상 : 계획노선 인근 수계	○ 계획시행에 따른 자연환경자산에 미치는 영향 예측 ○ 자료 및 현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동·식물 및 서식환경을 조사하고 동·식물 상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분석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① 조사내용 : 지형 형상, 지질 상황, 생태 자연도 1등급 등 보전가치가 있는 지형·지질 등 ② 조사범위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산계 ③ 조사방법 : 자료 및 현지조사 병행	○ 계획시행에 따른 지형변화 및 생태축 단절영향 검토 ○ 생태자연도 1등급 등 보전가치가 있는 지형의 영향 유무 검토
	주변 자연 경관에 미치는 영향	① 조사내용 : 주변 경관 현황 및 경관자원 현황 ② 조사범위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 자료 및 현지조사 병행	○ 계획시행으로 인한 경관 변화 검토 (근경, 중경, 원경) ○ 보전가치가 있는 경관자원 영향 여부 검토
	수환경의 보전	① 조사내용 : 지표 및 지하수질 현황, 오염원 현황 ② 조사범위 : 계획노선 인근 수계(창선천, 소하천 등) 및 해양환경 ③ 조사방법 :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병행 ④ 조사지점 - 지표수질 : 5지점 × 1회 - 지하수질 : 5지점 × 1회	○ 계획노선 및 주변 수계(해양환경 포함)의 현황 파악, 계획시행으로 인한 인근 하천 및 해양환경 영향 검토

<표 4.1-2 계속>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별 조사예측방법

평가항목		조사 계획		예측 및 평가방법
입 지 의 타 당 성	생활 환경의 안정성 부 합 성	환경 기준 의	대기질 ① 조사내용 : 대기질 현황 ② 조사범위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 자료 및 현지조사 병행 ④ 조사지점 : 4지점 × 1회(3일 연속)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의 대기질 현황 파악 및 계획시행시 대기질 영향검토
		토양	① 조사내용 : 토양 현황 ② 조사범위 : 계획노선 ③ 조사방법 : 자료 및 현지조사 병행 ④ 조사지점 : 5지점 × 1회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의 토양오염 현황 파악 및 계획시행시 토양오염 유발요인 검토
		소음 · 진동	① 조사내용 : 소음·진동 현황 ② 조사범위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 자료 및 현지조사 병행 ④ 조사지점 : 7지점 × 1회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의 소음·진동 현황 파악 및 계획시행시 소음·진동 영향 검토
	생활 환경의 안정성	환경기초 시설의 적정성	① 조사내용 : 환경기초시설 현황 및 장래계획 ② 조사범위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 자료 및 현지조사 병행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의 환경기초시설 현황 파악 및 주변 오염원 처리계획 검토
		자원· 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① 조사내용 :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온실가스 배출현황 등 ② 조사범위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 자료 및 현지조사 병행	○ 계획시행시 폐기물 발생 검토 및 자원 활용계획 검토 ○ 계획시행시 온실가스 배출 변화 예측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에너지 사용 계획 등 검토
	사회 · 경제 환경 과의 조화성	인구·주거	① 조사내용 : 인구 및 주거 현황 ② 조사범위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 기존자료 및 현지조사 병행	○ 계획시행으로 인한 인구·주거 변화 검토
		환경 친화적 토지이용	① 조사내용 : 용도별, 지목별 토지이용 ② 조사범위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 기존자료 및 현지조사 병행	○ 계획시행으로 인한 토지이용변화 검토

나. 조사지점 및 선정 사유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의 환경 현황을 파악하고, 계획시행으로 인한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수립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계획노선 및 주변에 분포하는 주거지역, 시설물 등을 조사지점으로 선정하였음(<표 4.2-6>, (그림 4.2-1) 참조)

4.2 환경영향평가

4.2.1 평가항목의 설정

가. 환경영향요소 추출

- 평가항목을 설정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을 토대로 공사시와 운영시를 구분하여 자연생태환경,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환경영향요소를 추출하였음

〈표 4.2-1〉 환경영향요소 추출

구분	공종	환경영향요소
공사시	○ 도로노선공사	○ 지형변형 ○ 수목의 벌채 ○ 절토 및 성토 ○ 굴착 ○ 토지점용, 지장물철거
	○ 건설자재	○ 골재, 석재의 확보·운반 ○ 건설기자재 운반·가동 ○ 토사이동
	○ 시설공사	○ 교량 및 교차로 설치 ○ 배수 및 통로공사 ○ 포장공사 ○ 공사인부 투입
운영시	○ 시설이용	○ 도로·교량 ○ 배수로 및 통로
	○ 차량통행	○ 배기가스 등 발생 ○ 소음 발생

나. 환경영향요소와 평가항목간 행렬식 대조표

- 계획시행으로 인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평가방법은 Leopold가 고안한 행렬식 대조표 방식을 적용하여 평가하였음
- 환경영향요소와 평가항목간의 상호평가는 상호관련성 크기를 부호와 숫자를 이용하여 정량적으로 표시하는 것으로써 부호와 숫자 6단계로 구분하여 표시하였으며, 앞에서 추출된 환경영향요소와 평가항목들의 상호 관련성과 크기를 행렬식 대조표로 작성하였음

〈표 4.2-2〉 행렬식 대조표 등급설정기준

등급	영향 또는 관련성의 내용	등급	영향 또는 관련성의 내용
●	개발되면 상당히 좋다.	△	악영향은 있으나 미약하다.
■	개발되면 비교적 긍정적이다.	□	악영향이 다소 있다.
▲	개발되면 긍정적이거나 크기는 작다.	○	악영향이 크다.

〈표 4.2-3〉 평가항목과 환경영향요소와의 관계

환경영향요소		자연생태 환경분야		대기환경분야			수 환경 분야		토지환경분야			생활환경분야		사회·경제 분야		
		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기 상	대 기 질	온실가스	수질 (수리수문 포함)	해양환경	토 지 이용	토 양	지형·지질	친환경적자원순환	소음·진동	위락·경관	인 구	주 거
공사	도로 노선공사	지형 변형	□	□							○			△		
		수목의 벌채	□	□		□	□			□		△		△		
		흙꺾기 및 쌓기						□		□	○		□	△		
		발파 및 굴착				□		△				□		○		
		토지점용, 지장물철거								△	△		□			
	건설자재	골재, 석재의 확보·운반			△	△	△						□			
		건설기자재 운반·가동			○	○	○			△		△	□			
		토사 이동			○	○										
	시설공사	교량 및 교차로설치	△	△				○	○							
		배수 및 통로공사						△								
		포장공사			△	△	△					△	△			
		공사인부투입						△	△	△		△				
운영	시설이용	도로 및 교량	□	□	△	△	△	■			△	□	□	●	■	
		배수로 및 통로						□								
	차량통행	배기가스 등 발생	△	△	□	□	△			△						
		소음 발생	△	△									□			

다. 평가항목의 설정

1) 평가대상 항목 설정

- 본 계획시행에 따른 평가항목은 「환경영향평가법」 및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 고시 2021-300호(2021.12.30)」,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 매뉴얼, 2017.12, 환경부」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심의의견을 반영하여 설정하였음
- 대기질, 온실가스, 수질, 해양환경, 토지이용, 토양, 지형·지질, 동·식물상, 소음·진동, 경관 등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항목을 중점평가항목으로 선정하였음
- 자연환경자산, 기상, 친환경적자원순환, 일조장해, 인구·주거 등 기초 자료로 활용하거나 지역특성 파악 및 비교적 영향이 적은 항목은 일반평가항목으로 선정하였음
- 그 외 본 계획시행에 따라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악취, 위락, 위생·공중보건, 전파장해, 산업 등 항목은 평가항목에서 제외하였고, 각 항목별 선정사유는 다음 표와 같음

〈표 4.2-4〉 평가항목 선정(제외) 사유

분야	대상항목	항목선정			선정(제외)사유
		중점	일반	제외	
자연생태 환경	동·식물상	○	-	-	○계획시행 전·후 동·식물상 서식환경 변화예측
	자연환경자산	○	-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의 자연환경자산에 미치는 영향 예측
대기환경	기 상	-	○	-	○계획노선 주변 대기질 예측시 기초자료로 활용
	대기질	○	-	-	○공사시 비산먼지 발생 및 공사장비로 인한 오염물질 발생 ○계획노선 차량통행으로 인한 오염물질 발생 등의 영향
	악 취	-	-	○	○계획시행으로 인한 악취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함.
	온실가스	-	○	-	○공사시 투입장비 및 운영시 이동차량 증가 및 에너지 이용 등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이 예상됨
수환경	수 질 (수리·수문 포함)	○	-	-	○공사시 강우로 인한 토사유출 및 공사인부 투입에 의한 오수 발생, 운영시 비점오염물질 발생 등이 예상됨 ○교량 공사에 따른 계획노선 주변 수계 부유물질 발생
	해양환경	○	-	-	○교량(창선교)공사에 따른 부유사 발생으로 인근 해양 환경의 영향 예상됨

〈표 4.2-4 계속〉 평가항목 선정(제외) 사유

분야	대상항목	항목선정			선정(제외)사유
		중점	일반	제외	
토지환경	토지이용	-	○	-	○ 계획시행 전·후의 토지이용상의 변화가 예상됨
	토 양	-	○	-	○ 공사시 공사장비 가동에 따른 폐유발생, 지장물 철거에 따른 토양오염 영향 등이 예상됨
	지형·지질	○	-	-	○ 절·성토에 의한 지형 변화 및 토사유출, 비옥토 유실, 사면발생 등이 예상됨
생활환경	친환경적 자원순환	-	○	-	○ 공사시·운영시 폐기물 발생 및 재활용 등 처리 대책을 수립하기 위함
	소음·진동	○	-	-	○ 공사시 공사장비에 의한 소음·진동 발생이 예상됨 ○ 운영시 교통 소음 영향이 예상됨
	위락	-	○	-	○ 계획시행에 따른 위락시설 이용 영향
	경관	○	-	-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의 경관요소를 파악하고 계획시행으로 인한 경관변화가 예상됨 ※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1항에 따른 자연경관 심의 대상사업임
	위생·공중보건	-	-	○	○ 「환경보건법 시행령」 별표1의 건강영향 항목의 추가·평가 대상사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평가 항목에서 제외함
	전파장해	-	-	○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에 전파장해 유발요인 없음
	일조장해	-	-	○	○ 계획시행으로 인한 일조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함
사회경제 환경	인구 및 주거	-	○	-	○ 통계자료를 통한 사업지구의 인구현황 파악
	산 업	-	-	○	○ 계획시행으로 인한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함
계		8항목	7항목	5항목	-

4.2.2 평가범위 및 방법 설정

가. 항목별 조사·예측 방법

- 본 계획의 평가항목별 조사·예측 방법은 다음 표와 같음
 - 조사는 기존자료를 활용하되, 현지조사 및 탐문조사를 병행하여 실시
 - 예측은 보전대상 등 조사시 파악된 계획대상지의 환경현황을 바탕으로 계획시행에 따른 환경영향 정도를 정량적으로 분석
 - 영향예측 결과에 따라 저감방안을 수립

〈표 4.2-5〉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조사·예측 방법

평가항목	조사 계획	영향예측 방법
동·식물상	①조사내용 : 육상동·식물상 및 육수동·식물상 ②조사범위 : 계획노선 및 경계로부터 0.5km ③조사방법 :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 계획시행으로 주변 동·식물에 미치는 영향 예측 -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결과 참조
자연환경 자산	①조사내용 : 자연환경자산 분포현황 ②조사범위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③조사방법 :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 계획시행으로 자연환경자산에 미치는 영향과악 -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결과 참조
기 상	①조사내용 : 계획노선 주변 기상현황 ②조사범위 : 계획노선과 인접한 남해기상관측소 ③조사방법 : 관련 기상관측자료	○ 기상연보 자료 분석·정리
대기질	①조사내용 : 주변 대기오염 발생원 및 대기영향예상시설 분포현황, 대기질 현황 ②조사범위 : 계획노선 및 경계로부터 0.5km ③조사방법 : 기존자료 및 현지 조사 ④조사지점 : 4지점 × 2회 이상(3일 연속)	○ 토공량 및 장비운영에 따른 비산먼지, NOx 항목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계획노선 인근 통행차량에 의한 영향 예측 - 공사시 : AERMOD 확산모델 이용 - 운영시 : CALINE-3 또는 AERMOD
온실가스	①조사내용 : 계획노선 인근 온실가스 배출시설 및 에너지 이용시설 현황과악 ②조사범위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③조사방법 : 기존자료 조사	○ 온실가스 배출원단위를 통한 공사시 및 운영시 온실가스 배출량 예측
수 질 (수리·수문 포함)	①조사내용 : 지표·지하수질 현황, 수질관련 환경기초 시설 현황 등 홍수현황 및 배수체계 조사 ②조사범위 : 계획노선 주변 수계(창선천, 소하천 등) ③조사방법 : 기존자료 및 현지 조사, 통계자료 활용, 문헌조사 ④조사지점 - 지표수질 : 5지점 × 2회 이상 - 지하수질 : 5지점 × 2회 이상	○ 공사시 토사유출로 인하여 주변 수계(창선천, 소하천 등)에 미치는 영향 예측 - 합리식 이용 ○ 공사인부에 의한 오수 발생량 산정 - 원단위법 이용 ○ 운영시 비점오염물질 영향예측 ○ 계획시행에 따른 계획노선 인근 수계의 수리·수문 변화 검토

<표 4.2-5 계속>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조사·예측 방법

평가항목	현 황 조 사	영향예측 방법
해양환경	①조사내용 : 창선교 인근 해양환경 현황 ②조사범위 : 창선교 주변 해역 ③조사방법 : 문헌조사(측정망 등) 및 현지조사(해역이용 협의 자료 연계) ④조사지점 : 해역이용협의 조사지점 연계	○교량공사시 부유사 확산으로 인한 인근 해역에 미치는 영향예측 -해역이용협의 자료 연계
토양	①조사내용 : 토양오염유발시설 현황, 토양오염도 현황 ②조사범위 : 계획노선 ③조사방법 : 기존자료 및 현지조사 ④조사지점 : 5지점 × 2회 이상	○토양오염 개연성 여부 및 계획시행에 따른 공사시 토양오염 영향 검토 -기존자료 및 현지 측정 결과 참조
지형·지질	①조사내용 : 지형·지질현황, 백두대간보호지역 등 특이 지형·지질 분포 현황 등 ②조사범위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③조사방법 :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절·성토에 의한 지형 변화, 토사유출, 비옥토 유출, 사면발생, 사면안정성 등 -문헌자료 및 본 계획관련 지반조사 보고서 등 참조
친환경적 자원순환	①조사내용 :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현황 ②조사범위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③조사방법 : 기존 원단위 자료 조사	○공사시 및 운영시 폐기물 발생 및 재활용 등 처리대책 -원단위법 이용
소음·진동	①조사내용 : 주변 발생 소음원 및 주요 정온 시설 분포 현황 ②조사범위 : 계획노선 및 경계로부터 0.5km ③조사방법 : 기존자료 및 현지조사 ④조사지점 : 7지점 × 2회 이상	○공사시 공사장비 가동에 의한 소음·진동 영향 예측 -합성소음도 산출식 및 점음원 거리감 쇄식 이용 ○운영시 계획노선 인근 및 내부 도로 등에 의한 소음 영향 예측 -교통소음예측식 이용
위락·경관	①조사내용 : 위락·경관 현황 ②조사범위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③조사방법 :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계획시행으로 인한 위락·경관 변화 예측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의 위락시설 현황 조사 -지형도 및 인공위성사진 분석, 경관시뮬레이션
인구·주거	①조사내용 : 인구현황 파악 ②조사범위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③조사방법 : 문헌자료(통계연보)	○문헌조사를 통한 계획노선 및 주변 지역의 인구현황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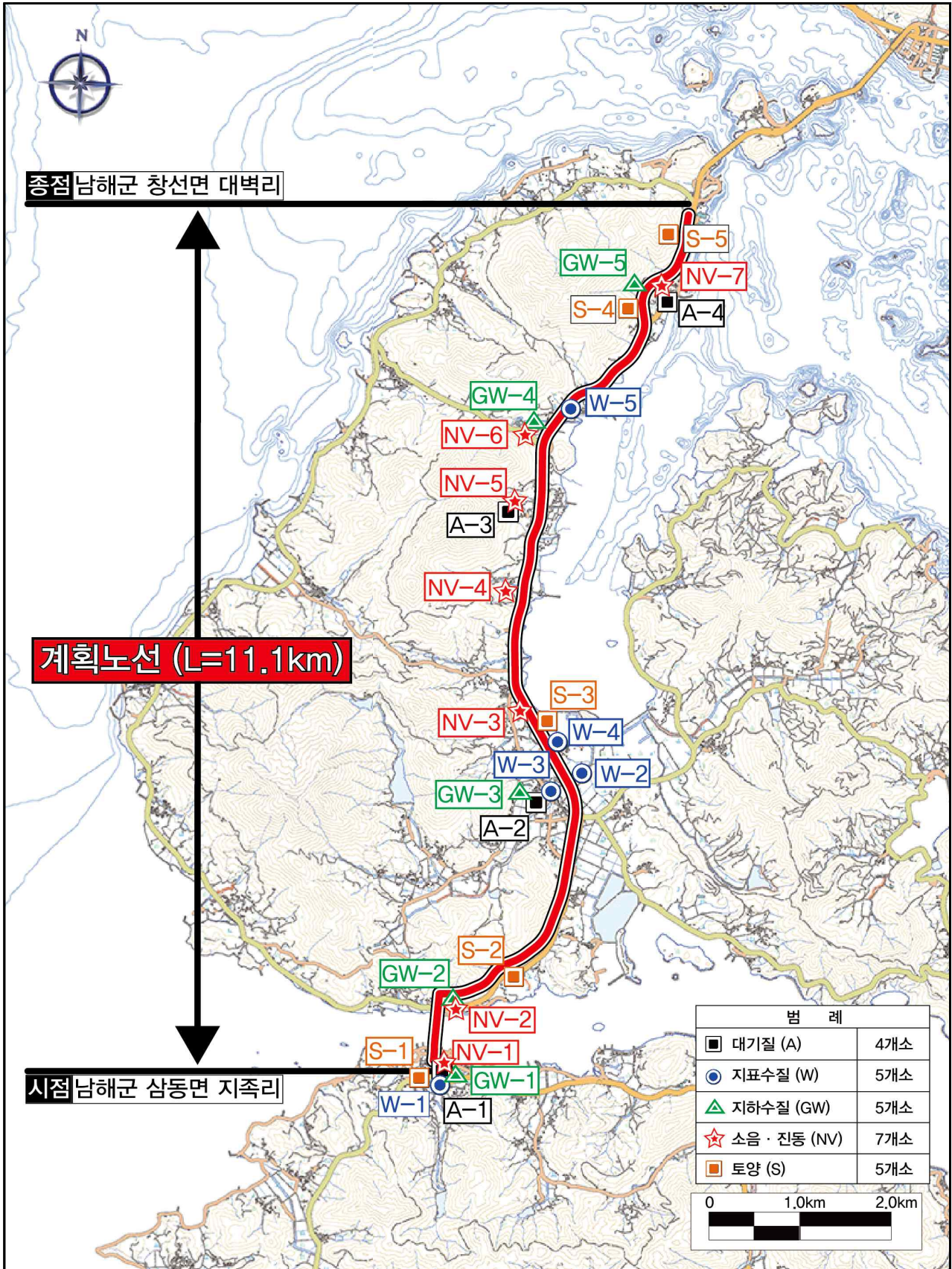
나. 조사지점 및 선정 사유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의 환경 현황을 파악하고, 계획시행으로 인한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수립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계획노선 및 주변에 분포하는 주거지역, 시설물 등을 측정지점을 선정하였음

<표 4.2-6>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조사 항목별 조사지점

구 분	조사지점명	조사지점 위치	비 고
대기질	A-1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지족리 271-1	가옥
	A-2	○경남 남해군 창선로97번길 6	창선면행정복지센터
	A-3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동대리 343-5	신촌경로당
	A-4	○경남 남해군 창선면 동부대로2843번길 27	냉천마을회관
수 질	W-1	○경남 남해군 삼동면 지족리 1204	지족천(소하천)
	W-2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창선로94번길 11-1	창선천(지방하천) 상류
	W-3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수산리 154	창선천(지방하천) 하류
	W-4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상신리 2-2	상신천(소하천)
	W-5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당항리 599-1	당항큰천(소하천)
지하수질	GW-1	○경남 남해군 삼동면 동부대로1858번길 4 인근	지족초등학교 인근
	GW-2	○경남 남해군 창선면 동부대로 1946	호원정
	GW-3	○경남 남해군 창선면 창선로97번길 16 인근	창선초등학교 인근
	GW-4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당항리 685	유진농원가든
	GW-5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당항리 153	냉천마을 입구
토 양	S-1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지족리 301-1	답
	S-2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지족리 산1-1	임야
	S-3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상신리 342	답
	S-4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당항리 66-1	전
	S-5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대벽리 99-9	전
소음·진동	NV-1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지족리 271-1	가옥
	NV-2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동부대로1932번길 6	가옥
	NV-3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상신리 419-1	가옥
	NV-4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동대리 381-1	가옥
	NV-5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동대리 343-5	신촌경로당
	NV-6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당항리 산126-4	다사랑복지센터
	NV-7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당항리 85	가옥

주) 측정지점은 현장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그림 4.2-1)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조사지점도

제5장 약식평가 절차 신청 여부

5.1 환경영향평가

- 본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제1항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관련 [별표3]에 의거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함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4조(약식절차 대상사업의 범위)에 의거 “약식절차 대상사업”에 해당되지 않음.

〈표 5-1〉 약식절차 대상계획 및 협의 요청시기

구분	검토기준	검토결과
사업 규모	[환경영향평가법] 제51조(환경영향평가의 협의 절차 등에 관한 특례) ①사업지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영향평가서(이하 “약식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25조에 따른 의견 수렴과 제27조에 따른 협의 요청을 함께 할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4조(약식절차 대상사업의 범위) 법 제5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대상사업의 규모가 별표 3에 따른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의 200퍼센트 이하인 사업으로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아니한 사업	○ 약식절차 대상사업 여부 검토결과 - 사업종류 : 도로의 건설사업 - 사업규모 : 11.1km(확장) -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 기준규모 : 10킬로미터 이상의 확장 · 규모검토 : $11.1\text{km}(\text{확장구간규모}) \div 10\text{km}(\text{기준규모}) \times 100 = 111.0\%$
지역 특성	○ 사업지역에 환경적·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다음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이 포함되지 아니한 사업	○ 환경적·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을 일부 포함하는 사업임
	가.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에 따른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 해당사항 없음
	나.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및 습지 주변관리지역	- 해당사항 없음
	다.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 해당사항 없음
	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야생생물 보호구역	- 해당사항 없음
	마.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5항에 따른 보호구역	- 계획노선 시점부 교량 ‘남해 지족해협 죽방렴(명승 제71호)’ 횡단
	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수변구역	- 해당사항 없음
	사.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수변구역	- 해당사항 없음
	사.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수변구역	- 해당사항 없음
	아.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수변구역	- 해당사항 없음
	자.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수변구역	- 해당사항 없음
	차.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 해당사항 없음

제6장 주민 등에 대한 의견 수렴계획

6.1 전략환경영향평가

6.1.1 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 공개

가. 결정내용 공개

- 관련 법령 :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 공개 내용 :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 결정된 ‘평가 항목 및 범위’ 등을 결정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14일 이상 공개하고 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함
- 공개 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

나. 주민 의견 반영

- 관련 법령 :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 공개된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에 대하여 주민 등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 이를 검토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반영

6.1.2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의견 수렴

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관계기관 의견 수렴

- 관련 법령 : 환경영향평가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한 후 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부산지방국토관리청), 관계 행정기관(남해군), 승인기관(부산지방국토관리청) 및 협의기관(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

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공고

- 관련 법령 :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 공고 주체 :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부산지방국토관리청)
- 공고 시기 : 초안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
- 공고 신문 :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일간신문과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지역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

- 공고 내용
 - 개발기본계획의 개요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람 기간 및 장소
 - 설명회 일시 및 장소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의 제출시기 및 방법
- 공고 및 공람내용 게시
 -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 공고 및 공람 내용,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 공람 기간 : 20일 이상 40일 이내(공휴일 제외)
- 공람 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삼동면사무소, 창선면사무소, 남해군청

다. 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

1) 설명회

- 관련 법령 :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 설명회 개최 주체 :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부산지방국토관리청)
- 설명회 시기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기간 내 실시
- 설명회 실시 공고 : 설명회 개최하기 7일전까지 공고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고 및 공람 사항에 포함하여 공고할 수 있음

2) 공청회

- 관련 법령 :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 공청회 개최 요건
 -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30명 이상인 경우
 -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5명 이상이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주민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

라. 주민의견 수렴

- 관련 법령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4조
- 의견 제출 기한 : 공람기간 시작된 날부터 공람기간이 끝난 후 7일 이내
- 제출 의견 :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계획의 수립으로 예상되는 환경영향, 환경보전방안 및 공청회 개최 요구 등에 대한 의견 제출

마.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 관련 법령 :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17조
-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지역

구 분	비 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	해당 없음
○ 「자연공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해당 없음
○ 「습지보전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및 습지주변관리지역	해당 없음
○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해당 없음

바.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 관련 법령 :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제4항 및 시행령 제19조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결과와 반영여부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게시

6.2 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및 제24조에 따라 결정된 환경영향평가항목등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하여 제25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에 의거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평가 대상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임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및 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절차에 관하여는 제12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다만, 주민에 대한 공고 및 공람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하여야 한다.
- 환경영향평가 절차 수행시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제5항 조건을 충족할 경우 협의기관의 장(영산강유역환경청)과 협의를 거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 및 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 여부를 결정할 계획임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제5항

-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및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경우(제14조에 따라 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한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협의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및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18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2. 제18조에 따른 협의 내용보다 사업규모가 30퍼센트 이상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
 3. 제18조에 따른 협의 내용보다 사업규모가 제22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최소 사업규모 이상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
 4. 폐기물소각시설, 폐기물매립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등 주민의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시설의 입지가 추가되지 아니한 경우

제7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7.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

- 본 계획수립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의거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운영하였음
- 주관부서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 심의방법 : 서면 심의
- 심의기간 : 2023년 6월 12일 ~ 2023년 6월 26일
- 위원구성 : 총 9명
- 심의위원

구 분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1	위원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시설과장	조○○	위원장
2	위 원	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	주무관	김○○	협의기관 소속공무원
3	위 원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시설주무관	조○○	승인기관 소속공무원
4	위 원	평화엔지니어링	상무	이○○	위원장 위촉 민간전문가
5	위 원	한국정책평가연구원	부연구위원	박○○	협의기관장 추천
6	위 원	남해군 환경과	팀장	김○○	관할자치단체 소속공무원
7	위 원	남해군 창선면	창선면 이장단 주민대표	김○○	주민대표
8	위 원	남해환경센터	센터장	조○○	시민단체 추천 민간전문가
9	위 원	경상대학교 해양토목공학과	교수	허○○	해양수산부장관 추천 해양전문가

7.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

- 부산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조○○위원장, 부산지방 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의견없음

7.3.1 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 김○○ 위원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남해 삼동~창선 국도건설공사]

□ 총괄 의견

- 동 사업은 남해군 삼동면~창선면을 연결하는 기존국도의 확·포장을 통해 도서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성을 확보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임
- 본 심의의견은 심의결과에 반영하여야 하며, 결정된 심의결과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함
- 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칠 중요도가 큰 중점 평가 항목에 대해 집중적으로 상세히 조사하여 평가서에 기술하되, 각 항목별로 현황, 예측 및 저감방안이 상호 긴밀한 연관성을 갖도록 검토·작성하여야 하며, 특히 피해 저감방안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내용과 효과 등을 상세히 기술하여야 함
- 평가서상의 모든 내용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확정된 내용이어야 하며, 조사방법(지점 선정, 예측 조건, 예측 시 사용된 수치 등)에 대한 산정근거를 명확히 하여 제시하는 등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3-72호, '23.04.13)」에 따라 충실히 작성하여야 함

□ 심의 의견

1. 대상지역의 설정

- 대상지역의 범위는 계획노선 지역 및 주변지역의 현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직·간접적으로 환경영향이 예상되는 지역을 포함하고, 평가항목별 범위 설정 근거 또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환경영향이 예상되는 지역의 범위를 과학적으로 예측·분석하고 관련 전문가, 지역 주민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평가대상지역 설정
- ※ 영향권 내 다른 개발사업이 추진될 경우 누적평가 실시

2. 토지이용구상안 및 대안

- 동 계획과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부합성, 교통수요 및 사업의 타당성, 도로계획의 대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관련 자료를 제시하여야 함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의 자연생태계 현황 및 지형 등을 고려하여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노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생태·자연도 1등급지역, 생태계 및 생태·녹지축, 자연경관, 해양생태계 등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 노선 선정·제시
- 평가항목별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환경보전방안 대안(규모, 토지이용 계획, 시기, 공법 등, 2~3개 대안)을 설정한 후 대안별 환경적 측면을 중점적으로 비교·제시하고 선정안에 대한 선정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시 계획노선의 지형 및 주변 생태계 현황 등을 고려하여 환경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강구

3. 평가항목 및 범위·방법 등

- 생태·자연도 1등급, 자연공원(한려해상국립공원), 법정보호종 서식지, 별도관리 지역(수산자원보호구역) 등 보전이 요구되는 지역과 계획노선과의 이격거리를 제시하고, 영향여부 및 저감방안을 검토·제시하여야 함
- 동·식물상, 대기질 및 소음·진동 등 각 항목별 평가범위 설정 시 사업의 특성, 입지여건, 지역특성 및 환경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범위를 설정하여야 함
 - 동·식물상 등 현지조사는 광역조사 등에서 확인된 주요종의 서식 가능성을 고려하여 조사시기[종 출현(활동)이 왕성한 계절 및 시기] 및 방법 등을 정하여 정량적·정성적으로 실시하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저감방안 수립·제시
 - 법정보호종 확인 시에는 조사범위 확대 및 추가 정밀조사 등의 방안 강구
- 생태계 연결성의 단절이 예상되는 구간에 대한 정밀분석을 실시하고, 영향이 예측되는 지역에서의 다양한 저감방안(생태통로, 로드킬 방지대책 등)을 검토·제시하여야 함
- 교량설치(창선교) 및 해양연접구간에서 도로공사가 추진되는바, 주변 해양 환경의 변화가 예상되므로, 해양환경 조사자료 등을 토대로 적정 저감방안을 검토·제시하여야 함
 - 공사로 인한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유속 감소 및 해저 퇴적변화, 저서생물 서식공간 훼손, 해양 생태계, 부유사 확산으로 인한 어업 피해 등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영향)을 예측하여 이에 대한 적정 저감방안 수립·제시
 - 운영 시 비점오염원 발생에 따른 적정 저감방안 수립·제시

- 주변 정온시설 현황(이격거리 포함)을 현황도에 중첩하여 표시하고, 공사 시 및 운영 시 주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여 구체적인 저감 방안을 검토·제시하여야 함
- 교량 건설 및 임야구간 절·성토 구간 등에 대해 경관 영향을 검토하고, 종합적인 경관 향상 대책을 검토·제시하여야 함
 - 절·성토 사면 등은 기존 수목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차폐대책을 수립하는 등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저감방안 검토·제시

4.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홍보를 통해 가급적 많은 주민 및 관계기관(시민단체 포함) 등의 의견이 사업계획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사업시행에 따른 영향권 내 주민들을 의견수렴 대상에 반드시 포함
 - 주민설명회 시에는 계획에 따른 환경적 영향 등을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용어 및 표·그림 등을 활용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 강구

5. 기타

- 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에서는 상기 제시된 의견을 충분히 검토·반영하고, 반영이 불가피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2023. 6.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 영산강유역환경청 주무관 김 [] (인)

7.3.2 평화엔지니어링(민간전문가) 이○○ 위원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남해 삼동-창선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 총괄 의견

- 본 계획은 지족해협을 통과하고, 노선 주변으로 다수의 주거지가 산재하여 분포하는 노선특성을 보이는 바, 신설교량 건설로 인한 주변 지역 해양환경 영향, 주거지 통과 구간 생활환경(대기질, 소음) 및 경관영향을 중점 평가하여 입지의 타당성을 확보하여야 함.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 평가 항목별 환경보전목표의 내용과 설정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2.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도로사업에서의 통상적인 대상지역 설정 범위로 설정하여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3. 토지이용 구상안
 - 의견 없음.
4. 대안
 - 전략환경영향평가지 검토항목별 대안평가를 추가하여 환경영향 측면에서의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안을 선정하여야 함.
5.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해상 통과 교량 공사에 따른 부유사 영향과 이에 대한 저감방안을 중점 검토하여 교량 계획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여야 함.
6.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의견 없음.
7. 기 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 본 계획은 지족해협을 통과하고, 노선 주변으로 다수의 주거지가 산재하여 분포하는 노선특성을 보이는 바, 신설교량 건설로 인한 해양환경 영향, 주거지 통과 구간 생활환경(대기질, 소음) 및 경관영향을 중점 평가하여 입지의 타당성을 확보하여야 함.

2023. 6.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 이

○○○

7.3.3 한국환경연구원 박○○ 위원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남해 삼동-창선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 총괄 의견

- 본 사업은 기개설된 도로를 확장 및 일부 신설하는 사업으로 주변 해양에 대한 영향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냉천마을을 우회하여 신규 개설하는 도로에 대해 환경적 측면에서 계획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함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 의견 없음
2.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계획 노선 일부가 산지 절취하여 통과하는바 발파공정 계획을 확인하고 발파공정이 있을경우 발파소음·진동에 대해 대상지역을 0.5km 이상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3. 토지이용 구상안
 - 의견 없음
4. 대안
 - 냉천마을 우회도로 계획에 대해 환경적 측면에서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5.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5+100, 5+900 인근 구간 등 해양과 연접하여 통과하는 구간을 중심으로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함
 - 계획 노선 주변으로 다수의 민가 및 정온시설이 위치하는 바 공사 시 및 운영 시 발생하는 대기, 소음·진동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저감 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6.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의견 없음
7. 기 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 의견 없음

2023. 6. 2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 박

(인)

7.3.4 남해군 환경과 김○○ 위원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남해 삼동-창선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 총괄 의견

- 남해 삼동-창선간의 도로개설구간은 창선면과 삼동면의 면소재지 및 대부분의 주민들이 생활하는 주거지를 통과함으로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 및 출퇴근시 차량의 불편을 중점적으로 고려 필요
 - 공사시는 비산먼지, 소음, 진동 억제조치의 강화가 필요
 - 공사완료 후에는 도로를 통과하는 차량으로 인한 소음, 진동, 배기가스로 주민생활의 불편을 예측하고 저감조치가 필요(필요지역에 소음차단벽의 설치가 필요)
- 도로가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대됨으로 인하여 노인들을 포함한 주민들이 도로를 횡단하는 부분, 생태계의 단절없는 연속성이 필요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 계획노선 인근의 마을보호수, 마을의 유산에 대한 조사 및 보호 필요, 인근 연안의 수질 및 생물의 보호 필요
 - 지형의 보전 : 섬지역의 특성상 평지가 없고 경사지로 인하여 절·성토가 예상되므로 최소화 필요
 - 수환경보전 : 교량공사 및 하천인근의 공사시 탁수 예방을 오탁방지막은 큰 효과가 보기 어려우므로 물길을 돌려 침전시키는 방법 고려 필요
2.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수환경보전은 계획노선 및 주변수계를 포함하여 평가하되, 하천이 급하게 연안으로 유입되므로 연안의 수질까지 포함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 소음진동은 계획노선 경계로부터 0.3km로 한정하지 말고 인근 주거지를 모두 포함 필요
3. 토지이용 구상안
 - 토지이용 측면에서 도로이용의 접근성은 증가하나 도로이용차량의 속도의 증가로 노인의 이용, 농기계 이용을 판단하여 계획이 필요
 - 특히 대부분의 마을이 도로를 중심으로 상하, 좌우로 나누어지게 되므로 마을주민간의 상호소통을 위한 공간 접근이 필요

4. 대안

- 본 개설되는 도로는 남해군과 창선면을 연결하여 봄여름가을 관광객의 이용이 많고, 토요일 일요일 및 휴일에 이용이 많으므로 시기순서를 결정할 시 반영이 필요

5.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수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하천수질을 파악시 1회 측정 및 남해군에 조사된 자료를 활용하여 수질과악(홈페이지에 게시중)
- 소음진동에 대하여는 주민들이 요청시 측정을 수용하여 측정하고 예측 및 저감방안의 수립이 필요

6.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주민의 의견수렴은 다양하게 수렴하여 반영이 필요
 - 특히, 노선의 주변에 있는 마을은 모두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여 주시기 바람

7. 기 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

2023. 6.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 김



7.3.5 남해군 주민대표 김○○ 위원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남해 삼동-창선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 총괄 의견

○ 평가항목·범위결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과 각 항목별 검토의견 및 문제점을 토대로 작성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 환경보전목표의 설정은 지역적으로 개별 특성이 강하므로 정성적 설정에 비중을 높이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함.

2.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의 적정성
-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은 대상지역의 규모나 보호종의 서식 유무도 중요하지만 생물종 다양성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여 대상지역을 설정하는 것도 반영되어야 함

3. 토지이용 구상안

○ 적정

4. 대안

○ 적정

5.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계획노선에 접한 주택의 소음·진동 영향 등을 각별히 검토하여 공사 준공 후 민원발생이 없도록 철저를 기함이 타당함.

6.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의견수렴절차를 생략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을 포함
- 가급적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적절함.

7. 기 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 상위 계획과의 부합성이나 입지 적절성 등에 대하여 추가적인 대안 기술
- 상위 계획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므로 주민의견 등이 상위 계획에 부합 할 경우 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함.

2023. 6 .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 김○○

7.3.6 남해환경센터 (시민단체) 조○○ 위원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남해 삼동-창선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총괄 의견

- 공사현장(계획노선)에서 인근하고 있는 동대만에 생태계보호종인 잘피(거머리말)의 대규모 군락이 있음을 숙지하시고 공사시, 특히 우기에 토사나 오염물질이 동대만으로 유입되지 못하도록 특별히 유의하시기 바람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

2.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의 적정성

3. 토지이용 구상안
○


4. 대안
○

5.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6.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가능하면 주민공청회 등을 실시하여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주시기 바람

7. 기 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 상위 계획과의 부합성이나 입지 적절성 등에 대하여 추가적인 대안 기술

2023. 6.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 조 

7.3.7 경상대학교 해양토목공학과(해양수산부장관 추천) 허○○ 위원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남해 삼동-창선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 총괄 의견

- 평가항목·범위결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과 각 항목별 검토의견 및 문제점을 토대로 작성
- 연안역을 끼고 있는 노선은 해일 등과 같은 자연재해위험에 대해 자유로운지에 대한 검토가 평가 항목·범위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
2.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의 적정성
3. 토지이용 구상안
○
4. 대안
○
5.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6.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의견수렴절차를 생략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을 포함
7. 기 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 상위 계획과의 부합성이나 입지 적절성 등에 대하여 추가적인 대안 기술

2023. 6. 13.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 허

 房

7.3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 조치계획

위원	의견	조치내용	비고
김** 위원	□ 총괄의견 ◦ 동 사업은 남해군 삼동면~창선면을 연결하는 기존국도의 확포장을 통해 도서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성을 확보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임	-	-
	◦ 본 심의의견은 심의결과에 반영하여야 하며, 결정된 심의결과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함	◦ 심의의견을 반영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를 작성하겠음.	-
	◦ 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칠 중요도가 큰 중점 평가 항목에 대해 집중적으로 상세히 조사하여 평가서에 기술하되, 각 항목별로 현황, 예측 및 저감방안이 상호 긴밀한 연관성을 갖도록 검토·작성하여야 하며, 특히 피해 저감방안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내용과 효과 등을 상세히 기술하여야 함	◦ 관련 규정(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등)를 토대로 각 항목별 현황, 예측 및 저감방안을 검토·작성하겠음 - 특히 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히 조사하고, 저감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겠음.	-
	◦ 평가서상의 모든 내용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확정된 내용이어야 하며, 조사방법(지점 선정, 예측 조건, 예측 시 사용된 수치 등)에 대한 산정근거를 명확히 하여 제시하는 등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 2023-72호, '23.04.13)」에 따라 충실히 작성하여야 함	◦ 환경영향평가서상 모든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하겠음 - 조사방법(지점 선정, 예측 조건, 예측 시 사용된 수치 등)은 환경영향평가서 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겠음.	-
□ 심의의견 1. 대상지역의 설정 ◦ 대상지역의 범위는 계획노선 지역 및 주변지역의 현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직·간접적으로 환경영향이 예상되는 지역을 포함하고, 평가항목별 범위 설정 근거 또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환경영향이 예상되는 지역의 범위를 과학적으로 예측·분석하고 관련 전문가, 지역 주민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평가대상지역 설정 ※ 영향권 내 다른 개발사업이 추진될 경우 누적평가 실시	◦ 대상지역 설정사유 등을 명기하고, 환경영향 예측분석에 사용된 기법, 내용 등 관련자료 명시 및 사용근거 등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제시하겠음. - 관련규정(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등에 관한 안내서), 심의의견 등을 반영하여 평가대상지역을 설정하였음.	-	

위원	의견	조치계획	비고
김** 위원	2. 토지이용구상안 및 대안 ◦ 동 계획과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부합성, 교통수요 및 사업의 타당성, 도로계획의 대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관련 자료를 제시하여야 함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부합여부, 관련 지표의 타당성 및 대안검토 등을 종합 검토하여 최적노선을 제시하겠음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의 자연생태계 현황 및 지형 등을 고려하여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노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생태·자연도 1등급지역, 생태계 및 생태·녹지축, 자연경관, 해양생태계 등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 노선 선정·제시	◦ 본 사업시행으로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생태계 및 생태·녹지축, 자연경관, 해양생태계 등 자연환경을 충분히 확인하고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노선을 검토·제시하겠음.	-
	◦ 평가항목별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환경보전방안 대안(규모, 토지이용계획, 시기, 공법 등, 2~3개 대안)을 설정한 후 대안별 환경적 측면을 중점적으로 비교·제시하고 선정안에 대한 선정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시 계획노선의 지형 및 주변 생태계 현황 등을 고려하여 환경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강구	◦ 계획노선의 지형 및 주변 생태계 현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항목별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설정하고, 환경적 측면을 중점적으로 비교하여 선정안에 대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겠음.	-
	3. 평가항목 및 범위·방법 등 ◦ 생태·자연도 1등급, 자연공원(한려해상국립공원), 법정보호종 서식지, 별도관리지역(수산자원보호구역) 등 보전이 요구되는 지역과 계획노선과의 이격거리를 제시하고, 영향여부 및 저감방안을 검토제시하여야 함 ◦ 동·식물상, 대기질 및 소음·진동 등 각 항목별 평가범위 설정 시 사업의 특성, 입지여건, 지역특성 및 환경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범위를 설정하여야 함 - 동·식물상 등 현지조사는 광역조사 등에서 확인된 주요종의 서식 가능성을 고려하여 조사시기(종 출현(활동)이 왕성한 계절 및 시기) 및 방법 등을 정하여 정량적·정성적으로 실시하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저감방안 수립·제시 - 법정보호종 확인 시에는 조사범위 확대 및 추가 정밀조사 등의 방안 강구	◦ 생태·자연도 1등급, 자연공원(한려해상국립공원), 법정보호종 서식지, 별도관리지역(수산자원보호구역) 등 보전이 요구되는 지역과 계획노선과의 이격거리, 영향여부, 저감방안을 검토·제시하겠음. ◦ 각 항목별(동·식물상, 대기질 및 소음·진동 등) 평가범위를 사업의 특성, 입지여건, 지역특성 및 환경현황을 고려하여 평가범위를 설정하였음. - 본 계획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사업으로서 환경영향평가 협의시까지 주요종의 서식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사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조사는 정량·정성 조사를 실시하여 구체적인 저감방안을 수립·제시하겠음. - 계획노선 주변으로 법정보호종 확인시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발견 위치를 도면에 표기하고 구체적인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을 수립·제시하겠음.	-

위원	의견	조치내용	비고
김**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태계 연결성의 단절이 예상되는 구간에 대한 정밀분석을 실시하고, 영향이 예측되는 지역에서의 다양한 저감방안(생태통로, 로드킬 방지대책 등)을 검토·제시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 사업노선으로 생태계 연결성의 단절이 예상되는 구간을 정밀분석하여 생태계 연결성 단절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겠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량설치(창선교) 및 해양연접구간에서 도로공사가 추진되는바, 주변 해양환경의 변화가 예상되므로, 해양환경 조사자료 등을 토대로 적정 저감방안을 검토·제시하여야 함 - 공사로 인한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유속 감소 및 해저 퇴적변화, 저서생물 서식공간 훼손, 해양 생태계, 부유사 확산으로 인한 어업 피해 등)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영향을 예측하여 이에 대한 적정 저감방안 수립·제시 - 운영 시 비점오염원 발생에 따른 적정 저감방안 수립·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 사업으로 인하여 영향이 예상되는 교량설치(창선교) 및 해양연접구간 주변 해양환경 자료 등을 검토하여 적정 저감방안을 제시하겠음 - 본 계획(창선교 연장 : 438m)은 해역이용협의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시 해역이용협의 검토자료와 연계하여 해양환경에 대한 영향예측 및 저감방을 제시하겠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변 정온시설 현황(이격거리 포함)을 현황도에 중첩하여 표시하고, 공사 시 및 운영 시 주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여 구체적인 저감방안을 검토·제시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온시설 현황도에 이격거리를 표시하고, 공사 시 및 운영 시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여 구체적인 저감방안을 검토·제시하겠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량 건설 및 입야구간 절·성토 구간 등에 대해 경관 영향을 검토하고, 종합적인 경관 향상 대책을 검토·제시하여야 함 - 절·성토 사면 등은 기존 수목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차폐대책을 수립하는 등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저감방안 검토·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량 건설 및 입야구간 절·성토 구간 등에 대해 경관 영향을 검토하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저감방안을 검토·제시하겠음 	-
	<p>4.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홍보를 통해 가급적 많은 주민 및 관계기관(시민단체 포함) 등의 의견이 사업계획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사업시행에 따른 영향권 내 주민들을 의견수렴 대상에 반드시 포함 - 주민설명회 시에는 계획에 따른 환경적 영향 등을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용어 및 표·그림 등을 활용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 강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양한 매체(신문기사 등)를 이용하여 가급적 많은 주민 및 관계기관 등의 참여를 유도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겠음. - 사업시행에 따른 영향권 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음. - 주민설명회 시 주민들이 쉽게 이해하기 위해 쉬운 용어 및 표·그래프 등을 활용하여 환경적 영향 등의 정보를 제공하겠음. 	-
	<p>5. 기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에서는 상기 제시된 의견을 충분히 검토·반영하고, 반영이 불가피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시된 의견을 충분히 검토·반영하겠으며, 반영이 불가피한 경우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겠음. 	-

위원	의견	조치내용	비고
이** 위원	<p>□ 총괄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 계획은 지속해협을 통과하고, 노선 주변으로 다수의 주거지가 산재하여 분포하는 노선특성을 보이는 바, 신설교량 건설로 인한 주변 지역 해양환경 영향, 주거지 통과 구간 생활환경(대기질, 소음) 및 경관영향을 중점 평가하여 입지의 타당성을 확보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설교량 건설로 인한 주변 지역 해양환경 영향, 주거지 통과 구간 생활환경(대기질, 소음) 및 경관영향을 중점 평가하여 입지의 타당성을 확보하겠습니다 	-
	<p>□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p> <p>1.환경보전목표의 설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 항목별 환경보전목표의 내용과 설정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 항목별 환경보전목표의 내용과 설정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겠습니다 	-
	<p>2.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로사업에서의 통상적인 대상지역 설정 범위로 설정하여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련규정(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등에 관한 안내서) 및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을 토대로 통상적인 대상지역 범위를 설정하겠습니다 	-
	<p>3. 토지이용 구상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견없음 	-	-
	<p>4.대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략환경영향평가시 검토항목별 대안 평가를 추가하여 환경영향 측면에서의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안을 선정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략환경영향평가시 검토항목별 대안 평가를 추가하여 환경영향 측면에서의 대안을 검토하여 최적 대안노선을 선정하겠습니다 	-
	<p>5.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상 통과 교량 공사에 따른 부유사 영향과 이에 대한 저감방안을 중점 검토하여 교량 계획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상 통과 교량 공사에 따른 부유사 영향과 이에 대한 저감방안을 중점 검토하여 해상 교량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
	<p>6.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견없음 	-	-
	<p>7.기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 계획은 지속해협을 통과하고, 노선 주변으로 다수의 주거지가 산재하여 분포하는 노선특성을 보이는 바, 신설교량 건설로 인한 해양환경 영향, 주거지 통과 구간 생활환경(대기질, 소음) 및 경관영향을 중점 평가하여 입지의 타당성을 확보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설교량 건설로 인한 해양환경 영향, 주거지 통과 구간 생활환경(대기질, 소음) 및 경관영향을 중점 평가하여 입지의 타당성을 확보하겠습니다. 	-

위원	의견	조치내용	비고
박** 위원	□ 총괄의견 ◦ 본 사업은 기개설된 도로를 확장 및 일부 신설하는 사업으로 주변 해양에 대한 영향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냉천마을을 우회하여 신규 개설하는 도로에 대해 환경적 측면에서 계획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함	◦ 본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해양 영향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냉천마을 우회 노선에 대해 환경적 측면에서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작성하겠음.	-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환경보전목표의 설정 ◦ 의견없음	-	-
	2.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계획 노선 일부가 산지 절취하여 통과하는바 발파공정 계획을 확인하고 발파공정이 있을 경우 발파소음·진동에 대해 대상지역을 0.5km 이상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소음·진동 평가대상범위를 0.5km로 설정하였음.	-
	3. 토지이용 구상안 ◦ 의견없음	-	-
	4. 대안 ◦ 냉천마을 우회도로 계획에 대해 환경적 측면에서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냉천마을 우회도로 계획에 대한 환경적 측면에서 적정성을 검토하여 제시하겠음.	-
	5.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5+100, 5+900 인근 구간 등 해양과 연결하여 통과하는 구간을 중심으로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함	◦ 5+100, 5+900 인근 구간 등 해양과 연결하여 통과하는 구간을 중심으로 본 사업에 의한 해양환경 영향을 검토하겠음.	-
	◦ 계획 노선 주변으로 다수의 민가 및 정온시설이 위치하는 바 공사 시 및 운영 시 발생하는 대기, 소음·진동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저감 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 계획 노선 주변 정온시설(민가 등)에 대한 공사 시 및 운영 시 대기, 소음·진동에 대한 영향예측을 실시하여 적절한 저감대책을 수립하겠음.	-
	6.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의견없음	-	-
	7. 기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 의견없음	-	-

위원	의견	조치내용	비고
김** 위원	<p>□ 총괄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해 삼동-창선간의 도로개설구간은 창선면과 삼동면의 면소재지 및 대부분의 주민들이 생활하는 주거지를 통과함으로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 및 출퇴근시 차량의 불편을 중점적으로 고려 필요 - 공사시는 비산먼지, 소음, 진동 억제조치의 강화가 필요 - 공사완료 후에는 도로를 통과하는 차량으로 인한 소음, 진동, 배기가스로 주민 생활의 불편을 예측하고 저감조치가 필요 (필요지역에 소음 차단벽의 설치가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사업으로 인한 공사 시 및 운영 시 대기질, 소음·진동 등을 영향예측하여 주민들에게 영향이 최소화 할 수 있는 저감방안을 수립·제시하겠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가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대됨으로 인하여 노인들을 포함한 주민들이 도로를 횡단하는 부분, 생태계의 단절없는 연속성이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로박스 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노인들을 포함한 주민들의 생활권 단절 및 생태계의 단절이 없도록 연속성을 확보하겠음 	-
	<p>□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p> <p>1.환경보전목표의 설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물다양성 서식지 보전 : 계획노선 인근의 마을보호수, 마을의 유산에 대한 조사 및 보호 필요, 인근 연안의 수질 및 생물의 보호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노선 인근 마을보호수를 조사하여 영향예측 및 적정 저감방안을 제시하겠으며, 본 사업으로 인한 연안 수질 및 생물에 대한 영향여부를 검토하겠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형의 보전 : 섬지역의 특성상 평지가 없고 경사지로 인하여 절성토가 예상되므로 최소화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사지로 인하여 절성토가 예상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환경보전 : 교량공사 및 하천인근의 공사시 탁수 예방을 오탁방지막은 큰 효과가 보기 어려우므로 물길을 돌려 침전시키는 방법 고려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탁방지막 및 물길을 돌려 침전시키는 방법을 고려하여 공사로 인한 탁수를 최소화 하겠음 	-
	<p>2.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환경보전은 계획노선 및 주변수계를 포함하여 평가하되, 하천이 급하게 연안으로 유입되므로 연안의 수질까지 포함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안으로 유입되고 있는 하천(지방하천, 소하천) 하류부의 수질조사를 실시하겠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음진동은 계획노선 경계로부터 0.3km로 한정하지 말고 인근 주거지 모두 포함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근 주거지를 포함하여 소음·진동 평가 대상범위를 설정함(0.5km) 	-

위원	의견	조치내용	비고
김** 위원	3. 토지이용 구상안 ◦ 토지이용 측면에서 도로이용의 접근성은 증가하나 도로이용차량의 속도의 증가로 노인의 이용, 농기계의 이용 판단하여 계획이 필요 - 특히 대부분의 마을이 도로를 중심으로 상하, 좌우로 나누어지게 되므로 마을 주민간의 상호소통을 위한 공간 접근이 필요	◦ 통로박스 등을 설치하여 노인들이 이동, 농기계의 이용 등의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계획하겠음	-
	4. 대안 ◦ 본 개설되는 도로는 남해군과 창선면을 연결하여 봄여름가을겨울 관광객의 이용이 많고, 토요일 일요일 및 휴일에 이용이 많으므로 시기순서를 결정할 시 반영이 필요	◦ 관광객 이용이 많은 시기의 교통량을 반영하여 검토하겠음	-
	5.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수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하천수질을 파악시 1회 측정 및 남해군에 조사된 자료를 활용하여 수질파악(홈페이지에 게시중)	◦ 하천수질 측정자료 및 남해군에 조사된 수질자료를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수록하겠음.	-
	◦ 소음진동에 대하여는 주민들이 요청시 측정을 수용하여 측정하고 예측 및 저감 방안의 수립이 필요	◦ 주민들의 소음진동 관련 의견 및 요청을 최대한 반영하여 측정하고, 예측 및 저감 방안을 수립하여 제시하겠음.	-
	6.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주민의 의견수렴은 다양하게 수립하여 반영이 필요 - 특히, 노선의 주변에 있는 마을은 모두 의견을 수립하여 반영하여 주시기 바람	◦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수렴(공고·공람, 주민설명회 등)할 계획임.	-

위원	의견	조치내용	비고
김** 위원	<p>□ 총괄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항목·범위결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과 각 항목별 검토의견 및 문제점을 토대로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항목·범위결정은 관련규정(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등에 관한 안내서)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심의의견을 토대로 작성하겠음 	-
	<p>□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p> <p>1.환경보전목표의 설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보전목표의 설정은 지역적으로 개별 특성이 강하므로 정성적 설정에 비중을 높이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성적 설정에 비중을 높여 환경보전목표를 설정하겠음 	-
	<p>2.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은 대상지역의 규모나 보호종의 서식 유무도 중요하지만 생물종 다양성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여 대상지역을 설정하는 것도 반영되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물종 다양성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여 대상지역 설정에 반영하겠음 	-
	<p>3.토지이용구성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정 	-	-
	<p>4.대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정 	-	-
	<p>5.평가 항목·범위·방법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식물 항목 : 농경지를 경유하는 계획 노선의 특성상 법정보호종(양서·과충류)이 서식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노선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경지를 경유하는 사업노선 구간 법정보호종(양서·과충류) 조사를 실시하여 노선계획에 반영하겠음 	-
	<p>6.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견수렴절차를 생략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을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급적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적절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수렴(공고·공람, 주민설명회 등)할 계획임. 	-
	<p>7.기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위 계획과의 부합성이나 입지 적절성 등에 대하여 추가적인 대안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위 계획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므로 주민 의견 등이 상위 계획에 부합 할 경우 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주민의견 등을 검토하여 사업계획에 최대한 반영하겠음 	-

위원	의견	조치내용	비고
조** 위원	□ 총괄의견 ◦ 공사현장(계획노선)에서 인근하고 있는 동대만에 생태계보호종인 잘피(거머리말)의 대규모 군락이 있음을 숙지하고 공사시, 특히 우기에 토사나 오염물질이 동대만으로 유입되지 못하도록 특별히 유의하기 바람	◦ 공사시 동대만으로 토사 등의 저감방안을 수립하여 생태계보호종인 잘피(거머리말) 군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겠음	-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2.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의 적정성	-	-
	6.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가능하면 주민공청회 등을 실시하여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주시기 바람	◦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라 적극적으로 주민의견을 수렴(공고·공람, 주민설명회, [필요시]공청회)할 계획임	-
	7.기 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 상위 계획과의 부합성이나 입지 적절성 등에 대하여 추가적인 대안 기술	-	-

위원	의견	조치내용	비고
허** 위원	□ 총괄의견 ◦ 평가항목 범위결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과 각 항목별 검토의견 및 문제점을 토대로 작성 - 연안역을 끼고 있는 노선은 해일 등과 같은 자연재해위험에 대해 자유로운지에 대한 검토가 평가 항목 범위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본 사업은 재해영향평가 대상으로 해일 등과 같은 자연재해 위험은 재해영향평가에서 검토하는 사항임	-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의 적정성	-	-
	2.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의견수렴절차를 생략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을 포함	-	-
	3.기 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 상위 계획과의 부합성이나 입지 적절성 등에 대하여 추가적인 대안 기술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부합여부, 관련 지표의 타당성 및 대안검토 등을 통하여 최적노선을 검토·제시하겠음.	-